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고성미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6월 9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,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3조).

○ 위기상황 사유에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상의 범죄피해자로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함(안 제3조제17호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음.

2)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3조).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

○ 위기상황 사유에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상의 범죄피해자로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함(안 제3조제17호 신설).

- 긴급복지 지원의 위기 상황 기준에 범죄피해자를 추가함

다. 검토의견

○ 긴급복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

○ 본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를 긴급복지의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